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sup>6</sup> B60R 21/22	(45) 공고일자 1999년02월 18일	(11) 등록번호 특0171344
(21) 출원번호 특1995-062638	(24) 등록일자 1998년10월 19일	(65) 공개번호 특1997-039685
(22) 출원일자 1995년12월29일	(43) 공개일자 1997년07월24일	

(73) 특허권자	대우자동차주식회사 김태구
(72) 발명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99번지 박재완
(74) 대리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106 이종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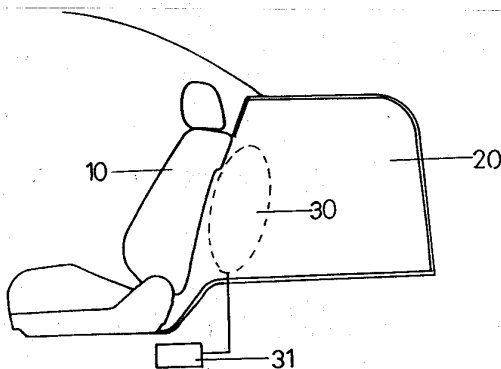
심사관 : 김명곤

(54) 에어백을 이용한 트렁크 안전장치

요약

본 발명은 트렁크에 화물을 실은 자동차의 충돌시에 뒷자석에 앉은 승객이 받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백을 이용한 트렁크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의 트렁크(20) 전방부를 폐쇄하고 있는 리어시트(10)의 등받이 후면에 통상의 에어백(30)을 구비하여 트렁크에 무거운 화물을 싣고 주행중 충돌될 경우에도 화물에 의한 충격이 리어시트에 직접 전달 되지 않아 리어시트에 앉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잇점이 있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에어백을 이용한 트렁크 안전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장착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리어시트

20 : 트렁크

30 : 에어백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자동차의 트렁크 안전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트렁크에 화물을 실은 자동차의 충돌시에 뒷자석에 앉은 승객이 받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에어백을 이용한 트렁크 안전장치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뒷부분에는 화물을 싣기 위한 공간인 트렁크(trunk)가 제공되어 있다. 트렁크의 후방 및 양 측부는 트렁크 리드, 사이드 판넬등으로 막혀있고, 트렁크의 전방부는 리어 시트가 벽면을 형성하고 있는바, 이는 리어 시트를 접은 후 길이가 긴 화물을 차량에 탑재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리어 시트가 트렁크의 전방 벽면을 형성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어시트에 앉은 탑승객은 차량의 충돌시 화물의 유동으로 인하여 화물에 의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즉, 트렁크에 무거운 화물이 탑재되어 있을때에 차량이 충돌되면 트렁크내의 화물이 전방에 있는 리어시트와 관성에 의하여 충돌하게 되므로 탑승객이 위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감안하여 리어시트의 강성을 증대시켜 탑승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트렁크에 탑재된 화물의 무게 및 충돌력의 크기가 증대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차량의 충돌시 트렁크에 탑재된 화물로부터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발명은, 자동차의 트렁크 전방부를 폐쇄하고 있는 리어시트의 등받이 후면에 통상의 에어백이 제공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이 차량의 트렁크에 적용된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도로써, 트렁크(20)의 전방부의 리어시트(10) 후면에 에어백(30)이 부착되어 있다. 이 에어백(30)은 운전석 및 조수석에 제공되는 에어백장치와 동일한 것으로써, 상기 에어백 장치의 충돌센서(31)를 이용한다.

따라서, 차량의 충돌시에 운전석 및 조수석에 제공되는 에어백이 폭발됨과 동시에 트렁크에 장착된 에어백(30)도 폭발된다. 이 에어백(30)은 리어시트(10) 등받이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본 발명이 차량의 트렁크에 적용될 경우에는 트렁크에 무거운 화물을 싣고 주행중 충돌될 경우에도 화물에 의한 충격이 리어시트에 직접 전달 되지 않아 리어 시트에 앉은 탑승자를 보호하는 잇점이 있다.

이상, 본 발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발명을 상기 실시예에 따라서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요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가지로 변경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 (57) 청구의 범위

### 청구항 1

자동차 내부에 센서로 작동되는 통상의 에어백 장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트렁크(20) 내부의 전방부를 폐쇄하고 있는 리어시트(10)의 등받이 후면 소정부위에 에어백(30)을 설치하여 트렁크(20)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적재물이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리어시트(10) 후면에 충격을 가할 경우, 팽창된 에어백(30)에 의하여 그 충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어백을 이용한 트렁크 안전장치.

### 도면

도면1

